

머리말

최근들어 世界經濟가 곧 不況의 긴 터널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希望去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世界景氣의 回復이 不確實하고, 失業率 또한 戰後 最高水準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先進諸國들은 對外的으로는 自由貿易理念을 내세우고 있지만, 對內的으로는 國內產業保護, 失業防止, 國際收支防禦 등을 目的으로 先進開途國의 輸出을 規制하는 등 新保護主義體制를 강화시켜 가고 있다. 輸入制限措置의 多樣化, 水平的·垂直的 經濟統合에 의한 bloc 經濟의 深化 등 世界貿易秩序의 혼란도 이런 觀點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國內賦存資源이 貧弱하고 國內市場이 狹小한 우리 經濟는 그동안 推進하여온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을 계속 指向해야 한다. 또한 輸出의 持續的伸張을 위해서는 國際競爭力を 강화시켜 先進國과의 協力關係를 確固히 定立하고, 國際貿易環境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推進해 왔고, 또 推進하고 있는 段階的 輸入自由化는 國內產業의 國際競爭력 提高를 위한 技術開發, 消費者 保護, 國際貿易秩序에의 順應 등의 總論的·概念的 作業으로서 妥當한 方向이다. 그러나 輸入自由化를 推進함에 있어 國際收支惡化와 外債累積, 또한 이에 따른 外債償還의 壓迫, 그리고 韓國商品의 幼弱한 對外競爭력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方向과 現實의 調和, 또한 產業, 貿易, 國際收支 등의 環境的要素들 間의 調和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하는 方法의 提示가 문제라 하겠다.

이에 本研究는 輸入自由化에 對應한 制度的 補完 등의 一環으로서 關稅率 및 關稅行政의 現況과 앞으로의 改善方向을 檢討해 보았다. 특히 本考에서는 國內產業의 競爭力確保와 國際收支改善의 側面에서 이를 照明하였다.

최근, 比較優位의 確保問題를 비롯하여 產業構造高度化를 통한 國際競爭력의 提高等 輸入自由化에 대한 論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本研究院에서는 곧 이어 產業構造高度化를 위한 80年代 關稅制度改編方向에 관한 研究도 出刊할 예정이다.

흔히 큰 問題, 화려한 問題, 理念的 問題에는 많은 接近이 시도되고, 그 論議도 활발하다. 그러나 實제적인 問題, 論議된 概念의 實踐可能性과 適合性, 그리고 方法論의

檢討는 소홀하기 쉬운 것이 우리나라의 研究風土이다.

具體的인 關稅率과 關稅行政의 改善 및 實行方向이라는 화려하지는 않으나 꼭 다루어야 할 課題를 體系있게 研究하여 애쓴 研究職들의 勞苦에 감사한다.

1983年 7月 日

韓 國 經 濟 研 究 院
代表理事·副院長 金 鎮 炫

目 次

마리말

要約 및 結論 9

I. 關稅率의 改編方向 16

 1. 關稅率 制度 16

 (1) 現 況 16

 (2) 日本의 先例 :

 — 輸入自由化에 對處한 關稅率 政策 — 21

 (3) 關稅率의 調整方向 24

 2. 彈力關稅制度 26

 (1) 現 況 26

 (2) 彈力關稅制度 運用의 改善方向 28

 3. 關稅減免制度 29

 (1) 現 況 29

 (2) 關稅減免制度의 改善方向 31

II. 關稅行政의 改編方向 32

 1. 關稅行政의 機能 32

 (1) 關稅行政의 現況 32

 (2) 關稅行政의 與件變化 32

 2. 世界 主要國의 貿易政策 · 關稅制度上의 輸出入 規制 實施 現況 33

 (1) 貿易 및 關稅政策 34

 (2) 輸入管理制度 36

 (3) 輸入規制現況 39

 3. 產業 · 貿易 · 關稅行政의 有機的 調整 42

 (1) 問題의 提起 43

 (2) 基本 調整 方向 43

 4. 輸入抑制 및 輸出促進 裝置 44

 (1) 關稅 行政 側面 45

 (2) 非關稅行政 側面 46

表 目 次

〈表 1〉 關稅率 構造.....	17
〈表 2〉 關稅率的 部別 分布(1973 : 1982).....	18
〈表 3〉 生產段階別 實效保護率.....	23
〈表 4〉 名目保護率與 實效保護率.....	24
〈表 5〉 重要產業 減稅對象業種與 品目數	29
〈表 6〉 資源開發產業 減稅對象業種與 品目數	30

要 約 및 結 論

I. 關稅率의 改編方向

1. 關稅率 制度

(1) 現 況

基本關稅率水準(平均關稅率)

年	1963	1967	1973	1982
%	38.1	39.0	31.5	23.7

① 平均關稅率의 추이를 經濟開發計劃과 연결하여 보면 第1次・第2次計劃期에는 關稅率水準이 강화되고 그 이후에는 대체로 減少傾向을 봄아 왔음을 알 수 있다.

② 有稅品과 無稅品의 構成은 1967年에 無稅品比率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1973年, 1982年에는 漸增하고 있다.

(단위 : %)

年	1963	1967	1973	1982
無稅品構成比	5.0	4.7	5.5	6.8

③ 關稅率의 構造를 보면 1963年的 17 단계에서 1982年的 9 단계로 대폭 單純化되었으며 財政關稅・保護關稅와 輸入禁止關稅의 各比率은 다음과 같이 變化하였다.

關稅率의 構造

區 分	1963年	1967年	1973年	1982年
財政關稅比率(20%以下)	36.1%	50.0%	56.6%	62.0%
保護關稅比率(25~90%)	57.4	38.4	40.0	36.4
輸入禁止關稅比率(100%以上)	6.5	10.7	2.8	0.9

(4) 關稅率의 部別 調整推移를 보면, i) 第 17 部(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가 1973 年의 平均稅率 23.2%에서 1982 年에 25.2%로 上引되었고, ii) 第 3 部(동식물성의 유지, 이들의 부해생산물 등), 第 4 部(조제식료품, 음료 등), 第 5 部(광물성 생산품), 第 8 部(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 등), 第 9 部(목재와 그 제품·목탄 등), 第 10 部(제자용 원료 등), 第 11 部(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第 12 部(신발류, 모자류 등), 第 13 部(석·석고·시멘트 등), 第 15 部(비금속과 그 제품), 第 19 部(무기·총포탄 등), 第 20 部(잡품) 등이 1973 年의 平均稅率과 1982 年의 平均稅率을 比較할 때 큰 幅으로 上하되었다. 1982 年 關稅率表로 보면, iii) 平均關稅率보다 낮은 것은 第 5 部(광물성 생산품), 第 6 部(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 第 9 部(목재와 그 제품·목탄 등), 第 15 部(비금속과 그 제품), 第 16 部(기계류와 전기 기기 및 이들의 부품), 第 19 部(무기·총포탄 등) 등이고, iv) 平均關稅率을 월등히 上廻하고 있는 것은 第 4 部(조제식료품·음료 등), 第 8 部(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 第 12 部(신발류·모자류 등), 第 20 部(잡품) 등 大部分 輕工業製品들이다. 이러한 關稅率構造는 우리나라의 產業別 發展水準의 程度·輸出產業과 輸入代替產業으로서의 輕重·國內需給動向·生必品과 奢侈品의 差等區分이 適切히 反映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產業發展過程은 原材料產業→部品產業→完製品產業이 라는 發展方向이 아니고 完製品產業→部品產業→原材料產業의 과정을 거치는 業種이 많으므로 重化學工業 초기단계에서 機械類 등에 대한 低率關稅가 불가피했다.

그리고 比較優位가 가능한 業種의 部品 自給度를 높이기 위한 關稅保護는 原料品·中間財·完製品의 關稅率體系를 傾斜構造로 이루게 한 것이다.

(2) 關稅率의 調整方向

1960 年代에 輸入自由化過程을 밟으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日本의 歷史的 經驗에 비추어 볼 때 1960 年代와 1980 年代의 國際經濟環境에 差異(新保護主義 傾向)가 있을 뿐만 아니라 日本의 1960 年代 產業構造·產業別 發展水準·國際收支의 均衡 등과 오늘의 우리의 그것과도 差異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輸入自由화와 關稅率體系의 基調는 產業保護의어야 할 것이다. 關稅率 調整은 다음과 같은 原則에 따라서 改編되어야 한다.

① 關稅率段階을 多段階화하여야 한다. 이는 保護對象產業의 發展水準이 多樣하기 때문이다. 稅率段階의 單純化는 產業의 發展水準이 어느정도 類似集團화되어 있을 때에만 適合하다. 따라서 產業의 成長度別 保護目的에는 稅率段階의 單純化가 適合하지 못하다.

② 輸入自由化的 進展速度를 急進化하는 경우라면 關稅率水準은 原則의으로 上

向調整되어야 한다. 즉, 輸入自由化의 충격을 關稅率引上으로 對處하되 점진적으로 引下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彈力關稅는 一時的인 補完手段에 불과하므로 輸入規制의 직접적인 수단이 없는 狀況에서는 自由化 충격완화에 實效性이 적다.

③ 生產加工段階別 關稅構造는 累進的(傾斜構造的)인 것이 바람직하다. 原料, 半製品, 完製품의 단계별로 實效保護率을 提高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粗原料보다는 加工原料의 稅率을 높여 原材料 國產化를 促進하여 競合半製品稅率을 非競合半製品의 稅率보다 높여 生產의 迂迴化를 조성하고 競合完製품의 稅率을 高率로 策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加工原料의 輸入이 많고, 半製品 수입으로 單純加工型產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大部分의 施設 機資材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狀況에서는 競爭輸入이나 非競爭輸入이나에 따라서 累進率에 差等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④ 基本稅率과 實行稅率은 接근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탄력관세대상, 관세감면대상, GATT 讓許對象 등의 品目은 基本稅率의 修正이 미리 豫見되는 것이므로 事前에 이를 고려하여 基本稅率을 策定해야 한다.

⑤ 成長產業에는 高度의 保護率, 一般產業에는 낮은 保護率, 그리고 停滯產業에는 關稅率의 据置를 뜻하는 維持關稅率로 策定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雇傭問題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所要資本量이 不足하여 技術開發速度가 더딘 狀況에서는 쇠퇴산업이라 하더라도 원활하고 점진적인 構造轉換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維持關稅가 必要한 것이다.

2. 彈力關稅制度

(1) 自由化 衝擊緩和의 彈力關稅

彈力關稅中 不當廉賣防止關稅·報復關稅·相計關稅는 GATT의 多者間 協商(MTN)에서 규정한 것으로 國際慣例에 의한 것이지만 價格面에서 대처하는 守勢的인 것이다. 關稅政策의 補完手段으로서 能動的인 것은 緊急關稅·物價平衡關稅와 割當關稅인 바 특히 GATT에서는 國내 산업의 保護手段으로서 輸入制限은 원칙적으로 禁止하지만 關稅割當制度는 無差別適用을 要件으로 하여 인정하고 있다.

(2) 彈力關稅制度 運用의 改善方向

彈力關稅中 輸入自由化期에 產業保護手段으로서 더욱 가다듬어야 할 것은 緊急關稅와 割當關稅이다.

① 緊急關稅와 割當關稅의 彈力範圍를 現行 $\pm \frac{40}{100}$ 에서 종래와 같이 $\pm \frac{50}{100}$ 으로 확대하여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現在 緊急關稅를 主로 하고 割當關稅를 從으로 하는 制度運營에서 割當關稅를 主로 하고 緊急關稅를 從으로 하는 運用制度로 전환해야 한다. 基本 秩序를 補完하는 政策手段으로 活用하려면 割當關稅의 恒常的인 實시와 그 適用對象의 大幅的인 확대가 바람직하다.

3. 關稅減免制度

(1) 減免現況

產業政策關聯關稅減免推移

區 分	最大輕減率	年 度	76	77	78	79	80	81
重要產業 (重化學業種)	70 %	억 원 감면액 / 감면총액	309 (43.3)	275 (26.0)	865 (49.9)	732 (34.4)	348 (18.8)	395 (16.8)
資源開發產業 (品目數 166)	85 %	억 원 감면액 / 감면총액	22 (3.1)				233 (10.0)	
原材料品 (品目數 190)	100 %	억 원 감면액 / 감면총액	103 (14.3)				857 (36.7)	
關稅分割納付 (對象業種 55개)	期 間 5 年 限 度	억 원	404				620	

위의 關稅減免은 직접적인 產業支援과 관련하여 重化學工業化와 第1次產業保護에 크게 寄與한 것이다.

(2) 改善方向

關稅減免制度는 輸入自由化 初期段階에서 그 衝擊의 緩和裝置로 活用되어야 한다. 따라서 關稅減免制度의 效率化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方案이 講究될 수 있다.

① 業種別의 成長可能性을 基準으로 하여 例컨대 3年時限附 減免業種, 5年時限附 減免業種, 10年時限附 減免業種등으로 關稅減免時限制를 導入한다.

② 時限附 減免業種別로 미리 年度別 減免의 치감율을 豫示한다.

이러한 方法은 減免制度의 폐지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企業으로 하여금 企業環境變化에 計劃性을 가지고 對處해 갈 수 있게 할것이다.

Ⅱ. 關稅行政의 改編方向

1. 關稅行政의 機能

(1) 關稅行政의 機能

關稅의 機能으로는 產業을 保護하는 機能(保護關稅), 稅收의 確保機能(財政關稅), 消費를 억제하는 機能(規制關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關稅의 機能을 뒷받침하는 關稅行政은 稅務行政과 監視行政으로 大別될 수 있는데, 經濟가 發展되고 貿易自由化가 推進됨에 따라 이러한 消極的 役割(稅收確保, 密輸團束)에서 나아가 보다 多樣化된 積極的 機能이 要望되고 있다.

(2) 關稅行政의 與件變化

最近 우리나라의 經濟環境을 살펴보면 國際收支의 不均衡 深化로 外債累積現狀을 나타내고 있으며, 對外 競爭力強化를 위한 段階의 輸入自由화의 推進에 따라 輸出入物量이 急激히 增大되고 있다. 이러한 經濟環境의 變化, 즉 關稅行政의 與件變化에 副應해 나가기 위해 要請되고 있는 關稅行政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① 輸入自由화의 推進에 따른 國內市場의 開放에 對處하여 關稅의 國內產業 保護機能이 強化되어야 하며, 또한 危害한 상품(특히 식품류)의 搬入可能性에 對備한 消費者 保護役割 및 公害產業導入에 따른 環境保護役割이 요구되고 있다.

② 輸出不振을 타개하고 不要不急한 輸入을 抑制하여 國際收支을 防禦할 수 있는 機能이 必要하다.

③ 輸出伸張과 輸入自由화의 推進에 따른 輸出入 物動量의 急增 結果, 稅關의 業務量도 急激히 增加하게 되었는데, 이를 迅速하게 處理하기 위해서는 電算化業務가 定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裝置를 具備함으로써 關稅行政이 彈力的인 輸入調整機能을 遂行할 수 있어야 하겠다.

④ 對外 經濟協力上 國際關稅協力의 重要性이 增大되었다.

2. 產業·貿易·關稅行政의 有機的 調整

(1) 調整裝置의 必要性

80年代의 國際貿易環境을 보면 生產과 貿易의 지속적 成長이 不確實하고 또 先進諸國들은 높은 失業率 等 國內經濟問題로 困難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先進諸國은 自國

의 經濟成長을 維持하기 위하여 對外名分上으로는 秩序있는 貿易, 自由貿易을 표방하면서도 對內的·實質적으로는 國內產業保護, 失業者救濟를 위해 保護貿易의인 措置를 強化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直接規制나 關稅等의 顯示的인 方向을 점차 緩和하여 國際貿易 秩序에 協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關稅行政上의 行政指導를 통하여 選別的이고 實質的인 輸入調節 機能을 效率的으로 遂行하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產業·貿易·關稅行政의 有機的調整을 위한 自動調節裝置의 講究가 要請되고 있다.

(2) 基本調整方向

產業·貿易·關稅行政의 有機的·自動的 協調體制를 形成하기 위한 基本調整方向은 다음과 같다.

① 長期的으로는 輸出入의 均衡을 維持하고 外貨獲得能力을 提高함과 동시에 外貨節約을 위한 근본적인 對策이 必要하다. 이런 점에서 短期的으로는 輸出能力과 資金調達能力을 고려하여 彈力的인 輸入調節機能強化를 위한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現在 體系化되지 못한채 分散되어 있는 國內의 需要量과 生產能力의 牽制機能을 총괄하는 綜合機構의 設立이 要請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適正 輸入量을 算出하고 各業體別 輸入量을 調査하여 行政指導의 基準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② 品目別 國內需要量, 生產能力, 適正輸入量에 대한 決定과 이에 따른 規制內容 및 方法의 決定을 위하여는 關聯行政部署間에 對內·對外情報 to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美國의 國際貿易委員會(ITC)와 같이 大統領 直屬機關으로 綜合貿易輸入調整機構를 設置하여 關稅 貿易政策을 總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緊急輸入調節機能은 稅關節次의 主管을 通해 關稅廳이 擔當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事前에 行政指導를 통하여 業體別로 각각 輸入을 調整시킬 수 있는 裝置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3. 輸入抑制 及 輸出促進 裝置

(1) 關稅行政 側面

貿易規模가 增大됨에 따라 效率的인 輸入調節을 위한 關稅行政 機能의 擴大가 必要하다.

① 輸入調節機能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商工部 主管으로 關稅廳과 品目別 關係部處가 國際貿易動向 및 稅關別·業體別 輸入狀況을 파악도록 하여야 한다.

② 輸入監視制度(特別輸入申告)를 設置하여 海外業者가 特別한 輸出優待措置를 받고

있는지의 與否를 確認한 후, 特別通關 申告書의 提出 要求 등으로 規制할 수 있게 한다. 또한 僂賤輸入으로 國內產業이 被害를 보게 되는 경우 이를 抑制하기 위해 濟洲에서와 같이 不當廉賣防止關稅의 賦課를 認定·調查하는 機構를 設置하는 것도 고려해 볼 價值가 있다.

③ 輸出入節次를 選別的으로 간소화하여 信用 있는 業體의 輸入, 혹은 緊急한 物品의 輸入時 先出庫·後通關을 함으로써 時間과 人力을 절약할 수 있다.

④ 經濟安定, 物價安定에 關聯하여 定額還給品目을 계속 擴大 實施할 必要가 있다.

⑤ 國際關稅協力 活動의 強化를 통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日本, 대만, 홍콩과의 稅關協力會議를 太平洋沿岸 및 ASEAN諸國들까지 擴大시킬 必要가 있다. 이러한 雙方間 稅關協力擴大는 특히 美國과 같은 先進國의 발달한 關稅行政技法의 導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⑥ 關稅 및 通關에 관한 事項이 혼합되어 法體係의 복잡성을 惹起시키고 있는 現行 關稅法을 關稅法과 通關法으로 二元化시킬 必要가 있다.

⑦ 指定稅關制度를 活性化하고 현재의 輸出入 申告件別 管理制度를 整備하여 業體別管理制度로 轉換할 必要가 있다.

⑧ 事前評價制度 대신, '86年부터 實施하기로 되어 있는 事後評價制度를 早期 實施함으로써 不必要한 通關所要時間 을 줄일 必要가 있다.

(2) 非關稅行政 側面

① 間接的인 統制方法으로는 貿易收支逆調의 是正策이 必要할 때 交易相對國의 輸入開放程度에 따라 輸入國別, 地域別, 商品別, 產業別로 差別的인 輸入政策을 實施하는 것과 같은 非關稅障壁의 活用이 考慮되어야 한다.

② 直接的인 統制手段으로 商品의 種類, 產業의 範圍뿐만 아니라, 特定企業 혹은 個人등 個個 經濟主體에 對하여 輸入規制를 할 수 있는 制度, 또한 有害商品의 國內導入을 抑制하기 위한 輸入檢查對象品目的 事前檢查制度의 講究도 必要하다.

I. 關稅率의 改編方向

輸入自由化를 段階的으로 實施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關稅制度는 어떠한 方向으로 改編되어야 하는가?

先進國의 歷史的 發展過程에서 關稅가 財政收入目的으로부터 產業保護手段으로 轉化되어 왔다는 意味에서, GATT에서도 關稅에 의한 輸入調節과 產業保護는 容認하고 있다는 點에서, 現實經濟와 產業의 發展이 連續的인 것처럼 政策과 制度의 基調는 現實經濟事象의 變化의 斷絕없는 連續性이 維持되어야 한다는 點에서, 그리고 關稅에 의한 產業의 保護가 先進經濟의 行態와 矛盾되지 않는다는 意味에서 여기서는 產業保護라는 觀點에 비추어 現行 우리나라 關稅制度를 살펴보고 自由化에 對應하는 制度의 改編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1. 關稅率制度

(1) 現況

基本稅率面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關稅率水準은 平均關稅率이 1963年 38.1%, 1967年 39.0%, 1973年 31.5%, 1982年 23.7%로서 經濟開發計劃과 連結되어 보면 第1次, 第2次計劃期에는 關稅率水準이 強化되고 그 以後에는 大體로 減少傾向을 봤다.

有稅品과 無稅品의 構成은 1967年에 無稅品比率이 약간 減少하였으나 1973, 1982年에 漸增하고 있다.

關稅率構造를 보면 從量稅와 擇一稅를 除外하고 1963年的 17段階에서 1982年的 9段階로大幅單純화되었다. 이와 함께 20%以下의 財政關稅比率은 1963年的 36.1%에서 67年에는 50.0%로, 1973年에는 56.6%로, 다시 1982年에는 62.0%로增加하였으며 이와 反對로 保稅關稅比率(25%~90%)은 각각 57.4%, 38.4%, 40.0%, 36.4%로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고 輸入禁止關稅(100%以上)는 각각 6.5%, 10.7%, 2.8%, 0.9%로 1967年을 除外하면 이것도大幅的으로縮小되었다. 稅目別集中率을 보면 1963年에는 財政關稅에 있어서는 15%, 保護關稅에 있어서는 30%가 가장 많았으나 1967·73年에는 각각 20%, 50%에, 1982年에는 각각 20%, 30%에 焦點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1〉

關 稅 率 構 造

區分 稅率	1963		1967		1973		1982	
	稅目數	構成比(%)	稅目數	構成比(%)	稅目數	構成比(%)	稅目數	構成比(%)
無 稅	101	5.0	148	4.7	219	5.5	154	6.8
5 %	54	2.7	37	1.2	103	2.6	85	3.7
10 "	160	7.9	241	7.6	412	10.3	244	10.7
15 "	277	13.6	96	3.0	102	2.5	257	11.2
20 "	140	6.9	1,062	33.5	1,425	35.7	674	29.6
25 "	159	7.8	101	3.2	13	0.3	72	3.2
30 "	182	8.9	22	0.7	360	9.0	320	14.0
35 "	136	6.7	116	3.7	16	0.4	-	-
40 "	138	6.8	217	6.8	315	7.9	197	8.6
50 "	158	7.7	339	10.7	383	9.6	241	10.6
60 "	146	7.2	184	5.8	246	6.2	-	-
65 "	-	-	1	-	-	-	-	-
70 "	70	3.4	181	5.7	47	1.2	-	-
80 "	168	8.3	58	1.8	215	5.4	-	-
90 "	13	0.6	-	-	-	-	-	-
100 "	120	5.9	281	8.9	99	2.5	21	0.9
120 "	1	0.0	4	0.1	-	-	-	-
150 "	-	-	53	1.7	11	0.3	-	-
180 "	10	0.5	-	-	-	-	-	-
250 "	3	0.1	-	-	-	-	-	-
從量稅 併課 또는 擇一	21	-	20	0.6	23	0.6	12	0.5
計	2,063	100.0	3,174	100.0	3,996	100.0	2,277	100.0

資料：大韓民國 關稅率表 1964, 1968, 1974, 1982, 各年版에 의거 作成.

關稅率構造를 좀 더 具體的으로 보면 〈表2〉와 같다. 〈表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部別 平均關稅率이 引上된 것은 第 17 部이며 其他는 引下되었는데 特히 引下率이 高은 것은 第 3 部, 第 4 部, 第 5 部, 第 8 部, 第 9 部, 第 10 部, 第 11 部, 第 12 部, 第 13 部, 第 15 部, 第 19 部, 第 20 部 등이다. 그리하여 1982年 關稅率表에서 볼 때 部別 平均關稅率이 全平均關稅率보다 낮은 것은 第 5 部, 第 6 部, 第 9 部, 第 15 部, 第 16 部, 第 19 部 등이며 나머지는 이를 上廻한다. 월등하게 上廻하는 것으로는 第 4 部, 第 8 部, 第 12 部, 第 20 部 등이 있는데 大部分이 輕工業品들로서 우리나라의 產業別 發展水準의 程度, 輸出產業과 輸入代替產業으로서의 輕重, 國內需給動向, 生必品과 奢侈品의

〈表2〉 關稅率의 部別分布(1973:1982)

稅率 部	無稅	5	10	15	20	25	30	35	40	50	60	70	80	100	150	從量 稅	計	平均 稅率
第1部 산동물 및 품('73) 중생산품('82)	12	0	8	0	29	0	22	0	4	0	14	0	7	0	0	2	98	29.3
	1				33	32	2		10							78	24.6	
第2部 식물성 품('73) 생산품('82)	11	0	5	4	60	0	37	0	36	5	23	1	1	4	0	1	188	32.1
	7	9			55		17		28	9						125	25.8	
第3部 동식물성 의약('73) 및 이들의 생산품, 조제 식용지('82)	0	0	0	0	2	0	4	1	13	7	8	0	1	0	0	36	45.1	
					13		6		4	1						24	27.1	
第4部 조제식료 품, 음료('73) 일품·식초 및 연초('82)	1	0	0	8	15	0	1	0	4	2	4	5	28	6	10	7	91	67.1
					27		1		6	37						1	81	44.5
第5部 광물성 품('73) 생산품('82)	31	7	42	10	46	0	9	0	23	2	0	0	0	0	0	0	170	16.5
	51	14	132	1	9		5		2								214	8.5
第6부 화학공업 과연파 생산품('82)	34	20	1	20	545	0	45	0	77	23	51	3	17	4	0	16	856	26.3
	49	1	21	5	134	33	83		29	8						10	373	21.6
第7부 인조수지· 인조플라스틱· 줄로우스 에스테르 센풀로오 스에에테 로·천연 고무·합성고무· 팩티스 및 이들의 제품('82)	1	0	10	5	8	0	12	0	16	19	10	0	7	0	0	0	88	39.1
			1		5		14		18	1							39	33.3
第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73) 여행용구('82) 핸드백· 기타 이외 유사한 용기 외거('82) (수예 의자 등 제외한다)	0	0	0	0	1	7	0	0	1	2	12	1	7	7	0	0	38	62.7
					6		10		4	10							30	36.0
第9부 목재와 그 제품, 목단, 코리 크와 그제 품, 철 에스파르 토기타의 조물재료('82) 의제품과 동세공방 제조설비 공	3	2	22	2	5	0	26	0	16	6	10	0	8	1	0	0	101	33.8
	18	4		20			12		3	8							65	21.7

部	稅率	無稅	5	10	15	20	25	30	35	40	50	60	70	80	100	150	從量 擇一	計	平均 稅率
第10部 제거용품 ('73) 료, 치와판 지 및 이물 ('82) 의 제품	15 8	0 9	8 3	0 2	9 3	0 3	10 17	0 3	6 4	36 0	4 13	0 0	0 0	0 0	0 0	101 45	38.4 24.9		
第11部 방직용 ('73) 섬유와 그 제품 ('82)	0 2	0 30	6 2	3 33	27 9	0 30	15 27	1 27	9 18	30 44	27 26	0 0	0 0	0 0	206 129	58.2 33.7			
第12部 신발류 · 모자류 · 산류 · 배 ('73) 및 이들의 부분품, 제 조우모와 ('82) 그 제품, 조화, 인발 제 품	0	0	0	0	0	0	0	0	3	4	1	6	6	7	0	0	27 20	73.3 48.5	
第13部 석 · 석고 시멘트 · 석면 · 운('73) 도, 기타이 와 유사한 재료의제 품, 도자제 품, 유리와 그 제품	0	0	3	1	21	0	0	0	11	26	11	0	13	1	0	0	87 60	46.0 32.8	
第14部 진주 · 귀 석 · 박귀 석 · 귀금 ('73) 속 · 귀금 속을 입힌 금속 및 이 들의제품 ('82) 모조신변 장식용품 과 주화	5 4	0	1	0	24	0	0	0	3	0	0	0	0	9	0	0	42 60	36.0 31.2	
第15部 비금속과 ('73) 그 제품 ('82)	5 2	7 20	48 38	13 12	83 136	6 5	20 52	14 14	41 10	70 3	3 8	20 20	3 3	0 0	0 0	341 289	33.4 21.2		
第16부 기계류와 ('73) 전기기기 및 이들 ('82) 의 부분품	31 2	54 12	240 5	21 203	408 155	0 34	86 13	0 14	34 31	95 31	31 0	12 12	1 1	0 0	0 0	1,013 437	22.4 19.4		

部	稅率 無率	5	10	15	20	25	30	35	40	50	60	70	80	100	150	從量 擇一	計	平均 稅率
第17部 차량· 항공기·('73) 선박과 수송기기('82) 관련품	58 10	13 9	7 2	0 7	17 5	0 8	7 5	0 9	9 13	13 8	0 0	6 6	6 3	1 2	2 58	147 25.2	23.2	
第18部 광학기기· 사진용기 기·영화 용기기· 계측기기 정밀기기('73) 의약· 화의료용 기기·시계, 악기·녹음 기 또는 음 성재생기· 텔레비전 의 영상 및 ('82) 음성의기 록기 또는 재생기 및 이들의 부 분 품	1 9	0 2	9 29	15 17	118 9	0 16	63 16	0 16	7 16	30 16	26 2	3 2	10 1	6 1	0 101	290 101	33.0 27.0	
第19부 부기· 총포탄 및 ('73) 이들의 부분 품 ('82)	5 6	0 0	2 0	0 0	9 0	0 0	1 0	0 0	0 2	0 0	0 0	0 0	3 0	0 0	0 0	22 9	28.6 16.7	
第20부 잡 품 ('8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5	10 27	5 0	2 0	15 0	14 0	0 0	47 34	76.1 47.4	
第21부 예술품·('73) 수집품과 글동 품('82)	6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6	0.0 0.0	

資料：大韓民國 關稅率表 1973, 1982 各年版에 의거 作成。

差等區分 등이 適切히 考慮된 것으로 보인다.

產業의 構造政策과 關聯하여 重化學工業化를 指向한다면 一般的으로 輕工業保護에서 重化學工業保護로, 따라서 關稅率 構造도 輕工業보다는 重化學工業에 높은 關稅率이 策定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이 一律的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 產業發展의 特異性 때

분이다. 즉, 우리나라의 產業의 發展過程은, 產業의 一貫體系라는 면에서 볼 때 原材料 產業→部品產業→完製品產業이라는 發展方向이 아니라 完製品產業→部品產業→ 原材料 產業이라는 發展過程을 밟는 業種이 많으므로 重化學工業의 初期에는 自然히 그에 必要한 機械類 등의 輸入費用負擔을 덜어주기 위하여 相對的으로 낮은 關稅率을 適用할 수밖에 없고 國內調達不能의 所要部品과 原材料輸入에 대해서도 그에 相應한 낮은 關稅率을 適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漸次 產業의 一貫體系를 確立하려는 努力이 傾注되면서 部品 產業의 自給度提高를 위해 部品產業에 대한 關稅保護를 強化하게 된다. 모든 產業, 특히 모든 製造業을 自己完結的인 一貫體系로 育成할 必要는 없으나 적어도 比較優位確保가 可能한 業種에 대해서는 一貫體系 確立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이 過程의 關稅率構造는 當然히 傾斜構造를 갖게 되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原料品, 中間財, 完製品의 關稅率體系가 傾斜構造를 이루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日本의 先例

— 輸入自由化에 對處한 關稅率政策 —

第2次大戰後 輸入自由化 過程을 가장 成功的으로 遂行하였다고 볼 수 있는 日本은, 輸入自由化에 對處하여 關稅率構造를 어떻게 改編하였는가를 보기로 한다.

輸入自由化에 對處하여 日本은 1961年에 大幅의 關稅改正을 斷行하였는 바, 먼저 關稅率改正의 基本原則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第1次產品, 原材料에 낮게, 加工度가 더해짐에 따라서 順次로 높게 策定한다.
- ② 生產財에 낮게, 消費財에 높게 한다.
- ③ 本國에서 生產되지 않든가 供給不充分한 것으로, 장차 生產이나 供給能力을 向上할 可能性이 없는 것에 낮게, 供給ability이 있어 外國產品과 競合하는 것에 높게 策定한다.
- ④ 將來 發展可能性이 있는 產業, 특히 新規產業에 대하여는 그 製品에 높게, 原材料에 낮게 한다.
- ⑤ 이미 充分히 發達한 產業(輸出產業 등)에 대하여는 製品, 原材料 모두 低稅로 한다.
- ⑥ 停滯產業 혹은 脆弱產業이지만, 雇傭關係 등으로 그 維持가 必要하든가, 혹은 轉換을 圓滑히 할 必要가 있는 것은 그 製品에 높게, 原材料에 낮게 한다.
- ⑦ 製品의 用途에 따라 生活必需品에 낮게, 奢侈品에 높게 하며, 또 教育·文化·衛生 등의 目的으로 必要한 것은 낮게 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原則은 輸入自由化的 意義를 確保하기 위해 自由化에 따른 產業構造政策上의 要請에 對應한 關稅率體系를 策定하는 것을 重要한 課題로 한 것이다. 즉, 關稅는

當時의 產業狀態를 그대로 維持, 安定시키는 機能이 아니라 오히려 產業의合理化를 推進하고 產業構造의高度化를 達成한다는 產業政策의基本目的을 한층促進하는機能을遂行해야 한다는 方針이一貫되고 있다. 따라서 關稅役割의 中心은 產業構造政策의 目的에 비추어 成長產業의 積極的인 育成을 위해 保護關稅의 強化를 짜하고 있다. 또 停滯產業이나 衰退產業에 대하여도 圓滑한 雇傭轉換을 위해相當한 保護關稅가 設定되었다. 其他一般產業에 대하여는 貿易의擴大, 產業의合理化, 需要者의 利益 등을考慮하여 可能한限 必要最低限度의 稅率을 設定할 方針이었으나 現實的으로는 이를 一般產業도 當時의 關稅率體系下에서 育成되어 왔고 또 輸入自由化라는 새로운壓力이 加重되는 것을考慮하면 關稅率을 一時에大幅의으로 引下하는데는 커다란危險이 따르게된다. 그리하여 結果적으로는 特別한 支障이 없는限, 一般產業에 대해서는 現行稅率을 据置한다는 方針을 採擇하였다.

이와 같은 自由化에 대한一般原則과 더불어 自由化를前提로 한個別品目의 稅率設定에 대하여는相當히特殊한配慮를 하고 있다. 특히 自由화의衝擊을緩和하기 위해問題된品目에 대하여는 여러가지彈力的關稅制度가採用되었다. 이를테면緊急關稅制度나 關稅割當制度의新設을비롯하여暫定增稅制度의採用이라든가, 從量稅率의擴大, 混合關稅의導入 및改正稅率의實施時期의延期 등 매우詳細한彈力的措置를講究한 것이다.

以上과 같은原則과方針에따라서改正된새로운關稅率體系의構造는크게變貌되었다. 新稅率은無稅, 從量稅, 選擇稅등을除外하면最低2%에서最高355%까지16種의從價稅率로構成되어從前의12種에比하여한층細分化되었다. 各部에設定된稅率數를보면, 第6部의化學工業生產品이485로總2,235중20%以上을차지하여가장많고그다음이第15部非金屬類의235, 이어서第11部의纖維關係207, 第16部의機械類206으로여기서도 產業構造의重化學工業化가明白히反映되어있다. <表2>에서우리의경우도第16部(437), 第6部(373), 第15部(289), 第5部(214)등으로重化學工業化가反映되어있다.

또無稅를包含한17種의稅率에 대하여각기適用狀況을보면適用品目이가장많은것은20%의稅率(589品目)로全體의27%를차지하고그에이어서15%,無稅, 10%, 25%의順이다. 1951年改正時의順位가15%의稅率을最多로無稅, 10%및20%로이어졌던것과比較하면稅率分布가全體적으로高稅率分布로移動하였으며그리하여平均關稅率은16.7%이나無稅品을除外하면約20%水準이나된다.

部別平均關稅率水準을보면第4部가33.8%로가장높고그다음이第12部(23.8%), 第20部(22.5%), 第18部(22.1%), 第19部(21.8%), 第17部(19.9%), 第8部(19.7%), 第11部(17.5%), 第15部(17.3%), 第7部(17.1%), 第16部(16.9%)

第 6 部(16.8%) 등의 順으로 總平均稅率을 上廻하고 第 13 部(15.2%), 第 9 部(13.6%), 第 2 部(12.0%), 第 14 部(11.9%), 第 3 部(11.5%), 第 10 部(11.2%), 第 1 部(9.5%), 第 5 部(5.3%), 第 21 部(0.0%) 등은 總平均稅率을 下廻한다.

實質的인 保護效果를 中心으로 한 當時 日本의 關稅構造를 產業別로 보면 農林水產·食料品이 100 對 152(名目關稅率 對 實效保護率), 鑛業品이 100 對 138, 輕工業品이 100 對 268, 重化學工業品이 100 對 178로서 工業品의 名目關稅率 引上에 의한 保護效果가 農林水產·食料品, 鑛業에서 보다 相對的으로 크며 또 이를 生產段階別로 보면 名目關稅率의 構成이 實效保護率의 構成보다도 그 隔差가 적다. 즉, 다음 〈表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原料段階와 消費財段階에 있어서의 名目保護率은 各其 0.031과 0.216이므로 그 差異는 0.185임에 대하여 實效保護率의 경우에는 各其 0.008과 0.446으로 그 差異가 0.438이나 된다. 이 事實은 產業部門중에서도 加工段階가 높은 部門이 二重的인 意味에서 保護를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한편으로 原料段階部門은 實質的으로 거의 아무런 保護를 받지 않음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當該部門 生產物에 대하여 相對的으로 높은 關稅率이 賦課됨으로써 投入과 產出의 兩面에서 加工段階가 높은 部門을 保護한 것이다.

〈表 3〉 生產段階別 實效保護率

部 門 \ 稅 種	名目保護率(A)	實效保護率(B)	B - A
原 料	0.031	0.008	△ 0.023
生 產 財	0.137	0.296	0.159
生 產 財 (1)	0.123	0.280	0.157
生 產 財 (2)	0.159	0.323	0.164
消 費 財	0.216	0.446	0.230

資料：世界經濟研究協會，世界經濟評論，1969年1月號，p. 11.

이와 같은 關稅를 좀 더 具體的으로 業種別로 본 것이 〈表 4〉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發見한다. 名目保護率平均은 17%水準이지만 實效保護率平均은 36.7%로 상당히 높은 水準이며 그 比率이 2.159로 名目關稅率水準의 1% 變動은 곧 實效保護率 2.159%의 增減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業種別로 이 比率이 가장 높은 것은 皮革이며 織物, 鐵鋼, 非鐵金屬도 대단히 높으며 가장 낮은 것이 船舶部門이다. 이와 같은 二重構造的인 裝置에 의해서 產業을 保護하였던 것이다.

<表4>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

業種	名目保護率(A)	實效保護率(B)	B - A	B/A
紡織物	9.6 (%)	23.6 (%)	14.0 (%)	2.458
衣類	13.0	45.6	32.6	3.508
木製品	27.7	77.5	49.8	2.8
紙・紙製品	27.1	76.1	49.0	2.811
皮革	8.2	15.9	7.7	1.939
皮製品	18.3	82.7	64.4	4.519
合成物質	24.5	59.4	34.9	2.424
其他化學品	13.0	21.0	8.0	1.615
非金屬礦物製品	21.0	42.2	21.2	2.009
金屬製品	17.8	32.1	14.3	1.803
鐵	12.3	23.3	11.0	1.894
銅鐵	12.0	21.8	9.8	1.816
鋁鐵	19.8	33.4	13.6	1.686
壓延	9.9	34.1	24.2	3.444
非鐵金屬	12.7	42.9	30.2	3.378
農業機械	14.4	14.4	0.0	1.0
電氣機械	6.4	19.7	13.3	3.078
船舶	16.0	21.6	5.6	1.35
鐵道車輛	19.7	30.8	11.1	1.563
自動車	12.4	11.6	△ 0.8	0.935
自轉車	37.0	20.8	5.8	1.386
航空機	24.3	79.6	42.6	2.151
精密機械	15.0	52.1	27.8	2.144
	23.0	18.1	3.1	1.206
		36.2	13.2	1.573

資料：世界經濟研究協會，世界經濟評論，1969年1月號。

(3) 關稅率의 調整方向

1960年代와 1980年代의 國際經濟環境의 差異, 1960年代의 日本의 產業構造, 產業別 發展水準, 產業의 一貫體系와 우리의 그것과의 差異를 設定하면 할수록 本格的인

輸入自由化와 關聯하여 關稅率體系의 基調는 產業保護이어야 함을 示唆해 준다.

이에 따라서 關稅率調整은 다음과 같은 原則에 따라서 改編되어야 할 것이다.

① 關稅率段階를 多段階화하여야 한다. 保護對象產業의 發展水準이 多樣할수록 그를 保護할 關稅率도 多樣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稅率段階의 單純化는 產業의 發展水準이 어느정도 類似集團화되어 있을때 關稅行政의 便利化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產業의 成長度別 保護目的에는 適合하지 않다.

② 輸入自由化的 進展速度를 急進化하는 경우라면 關稅率水準은 原則的으로 上向調整되어야 한다. 輸入制限은 輸入禁止 關稅率과 同一한 效果를 갖는 것이므로 輸入自由化過程에서는 稅率引上으로 對處하되 漸進的으로 引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或者는 彈力關稅로 自由化的 衝擊을 緩和한다고 하나 輸入을 規制하기 위한 直接的인 政策手段이 없는 狀況에서는 彈力關稅만으로는 效果를 거둘 수 없다. 또 彈力關稅는 一時的인 補完手段이어야 한다는 點에서 關稅率은 上向되어야 하는 것이다.

③ 生產加工段階別 關稅構造는 累進的(傾斜構造的)인 것이 바람직하다. 原料, 半製品, 完製품의 段階別 隔差로 實效保護率을 提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加工原料의 輸入이 많고 半製品 輸入으로 單純加工型產業이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大部分의 施設機資材를 輸入하고 있는 狀況下에서는, 競爭輸入이나 非競爭輸入이나에 따라서 累進率에 差等을 둘 수 밖에 없다. 따라서 粗原料보다는 加工原料의 稅率을 높혀 原材料 國產化를 促進하며 競合半製品 稅率을 非競合半製品 稅率보다 높혀 生產의 迂迴化를 造成하고 競合完製품 稅率을 高率로 策定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關稅構造는 미리 產業의 發展水準이나 重化學工業化를 考慮한 때문인지 半製品과 完製품(특히 生產財)의 稅率隔差가 뚜렷하지 않거나 오히려 逆進的인 경우가 있었는 바 적어도 基本稅率面에서는 稅率隔差를 分明히 하고, 一定期間 低關稅가 要請되는 것은 關稅減免으로 補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基本稅率과 實行稅率은 接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적어도 基本稅率 策定當時에 考慮될 수 있는 實行的인 要素는 미리 그 點을 考慮하여 基本稅率을 策定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彈力關稅對象(거의 恒常的인)이라든가 關稅減免對象이라든가, GATT讓許品目 등은 基本稅率의 修正이 미리 豫見되는 것이므로 事前 考慮하여 基本稅率을 策定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產業을 成長產業, 一般產業, 停滯產業으로 區分하여 成長產業에는 高度의 保護率, 一般產業에는 낮은 保護率 그리고 停滯產業에는 維持關稅를 策定하도록 配慮하여야 한다. 關稅機能의 中立化의 論理는 荒無地에서 모든 產業이 同時に 設置·出發하거나 發展水準이 거의 同一할 때 期待할 수 있는 短期的이고 靜態的인 論理이다. 이미 發生, 發展하고 있고 그 成長度가 多樣한 產業을 包容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같이

雇傭問題가 큰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또한 所要資本量이 不足하고 技術發展速度가 더디어 構造轉換의인 對象產業의 設立이 어려운 경우에는 衰退產業이라 하더라도 圓滑하고 漸進的인 構造轉換을 위해서 一定期間 維持關稅의in 關稅率의 据置가 要求되는 것이다.

(6) 關稅率의 設定順序는 重要品目과 其他品目으로 區分·設定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重要品目은 關稅率 設定에 있어서 根幹을 이루는 品目들이며 여기에는 主로 將來 期待成長產業과 國民經濟上 또는 國民生活面에 重大한 關係가 있는 產業生產物이 包含되며, 其他品目은 性狀, 用途, 工程 등이 이와 類似한 品目이거나 重要品目과 原料·製品關係에 있는 品目들인데, 이에 대해서는 重要品目의 稅率에 準해서 考慮되는 稅率을 算定하고 이 方法을 利用할 수 없는 特殊品目에 대하여는 個別的으로 稅率을 決定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品目別 稅率算定에 있어서는, (가) 當該品目의 產業政策上の 位置, (나) 當該品目的 國內外價格動向, (다) 當該品目的 國內生產狀況, (라) 需要產業과 消費者에 미치는 影響, (마) 當該品目的 關稅率의 變遷經緯, (바) 技術上의 問題點 등을 綜合的으로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7) 輸入自由化過程에 있어서의 輸入調節手段은 關稅뿐이므로 關稅政策의 融通性과 彈力性을 最大限度로 講究·活用하여야 한다. 基本關稅率 以外에 補助的in 政策手段으로 彈力關稅와 關稅減免制度를 適切히 配合하여 第 2次, 第 3次의in 對應手段을 마련하여 產業保護目的을 充分히 達成할 수 있도록 紹密한 制度 運營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2. 彈力關稅制度

(1) 現况

彈力關稅制度는 關稅率의 硬直性을 緩和하여 現實經濟의 動向에 機動性있게 對處하기 위하여 關稅率에 彈力性을 賦與하여 政策目的을 圓滑하게 遂行하려는 制度이다. 이를 위하여 法律이 定하는 一定한 範圍內에서 關稅率變更權을 行政府에 委任한다.

現行 우리나라 關稅法上 彈力關稅에는 ①不當廉賣防止關稅 ②報復關稅 ③緊急關稅 ④相計關稅 ⑤便益關稅 ⑥物價平衡關稅 ⑦割當關稅 등이 있다.

不當廉賣防止關稅는 不當廉賣된 物品輸入으로 因하여 該當 國內產業이 沮害를 받거나 沮害받을 憂慮가 있을 경우, 國內產業의 確立을妨害하는 경우에 該當國內產業을 保護하기 위하여 特別關稅를 賦課할 수 있도록 設置한 것이며, 報復關稅는 우리나라의 輸出物品, 船舶, 航空機등에 대하여 不利한 待遇를 하는 國家로 부터의 輸入物品에 대하여 그 報復手段으로서 報復關稅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相計關稅는 外國에 있어서 生產 또는 輸出獎勵金등을 直接, 間接으로 받은 物品이 輸入되는 경우에 그 物品輸

入으로 因하여 國內產業이 實質的인被害를 받거나 받을 憂慮가 있을 경우, 또는 國內產業의 確立이 沮害되는 경우 그 奬勵金과 同額以下의 關稅를 追徵할 수 있도록 하여 奬勵金이나 補助金을 받은 輸入品의 競爭力を 減殺시켜 國內產業을 保護하려고 하는 것이다. 便益關稅는 便益을 받지 않는 國家의 生產物에 대하여 貿易의 促進과 特殊關稅의 維持를 위하여 既存條約으로 便益을 提供하고 있는 範圍內에서 惠擇的인 取扱을 하는 關稅로 現在 26個國에 適用하고 있다.

便益關稅를 除外한 前三者(不當廉賣防止關稅, 報復關稅, 相計關稅)는 GATT의 多者間協商(MTN)에서 規定한 것이고 國際慣例의in 普偏的인 것이지만 性格面에서는 守勢의in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豫備의in 裝置로서 일찍부터 마련하였으나 輸入統制로 향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輸入自由化와 더불어 發動될 可能성이 많으므로 國際의in 紛爭이 若起되지 않도록 國際的in 視野와 經驗을 士臺로 具體的인 發動條件과 方法 및 節次에 관한 整備作業을 서둘려야 할 것이다.

關稅率政策의 補完手段으로 能動的인 價值가 있는 것은 緊急關稅, 物價平衡關稅, 割當關稅이다.

緊急關稅는 國民經濟上 重要한 產業을 緊急히 保護할 必要가 있거나, 特定物品의 輸入을 緊急히 抑制할 必要가 있거나, 產業構造變動으로 物品間의 稅率이 顯著히 不均衡하여 이를 是正할 必要가 있을 때에 基本關稅率에 100分의 40을 加算한 率의 範圍內에서 關稅를 賦課한다. 1974年1月4日以後 發動 施行되고 있는 것이 이 緊急關稅이다.

物價平衡關稅는 特定物品의 需給調節을 위하여, 國際價格變動에 대한 國內價格 安定을 위하여, 季節產品의 保護를 위하여 發動하는 것이며 각各 差額關稅, 滑尺關稅, 季節關稅라고도 한다. 다만 產業의 保護手段으로서의 機能面에서 보면 그렇게 重要한 役割을 期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割當關稅는 物資需給의 圓滑을 위하여 特定物品을 輸入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割當內低稅率을, 輸入을 抑制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割當外高稅率을 適用하는 制度로 彈力率의 範圍는 基本關稅率에 加減 100分의 40의 率을 적용한다.

割當關稅에는 몇가지 考慮하여야 할 點이 있다. 그것은 特定品目에 대한 限度內 輸入數量, 限度內稅率과 限度外稅率 및 割當方式 등이다. 關稅割當數量은 割當內低稅率의 適用에 의하여 國內市場價格과 同一하거나 그 以下로 國內流入이 可能하도록 하는 方法이다. 이러한 數量은 보통 一定期間內의 需要量을 推定하여 이와 同種商品의 國內生產豫定數量을 控除한 數量에 의하여 決定된다. 이 경우에 需要供給의 長期的 觀點에서 數量을 決定하는 固定「쿼타」와 變動을勘案하여 政府가 分期마다 決定하는 伸縮「쿼타」, 그리고 一定한 輸入價格을 基準으로 하는 價格「쿼타」가 있다.

다음에 割當內稅率의 適用을 받아 輸入되는 것은 割當數量에 限정되어 있으며 이 部

分에 관한限り國內產業保護을 거의考慮할必要가 없다. 따라서需要面에重點은 두고低稅率이設定된다. 이와反對로割當外稅率의適用을받아輸入되는 것은國內生產品의需要를浸蝕하는 것이므로國內生products의保護를위하여高稅率을設定할必要가 있다. 그러나이때割當外稅率이割當外輸入을禁止하는程度의高率인 경우에는國內生產者가容易하게이에依存하여企業의合理화慾望을減少시킬憂慮가있다. 또割當外稅率과割當內稅率과의隔差가적은경우에는「취타」設定의意義가事實上相殺되므로保護度를勘案한稅率隔差의設定이바람직하다.

割當方法에는先着順方式과事前割當方式이있다.割當內稅率과割當外稅率의隔差가크고數量限度가적은경우에는割當을받은者에게큰利益을주게되는것이므로이割當方式은關稅割當制度의運用上매우重要한意味를갖는것이다.先着順方式은輸入業者の申請에대하여割當內數量을先着順으로割當하는方法으로,稅法上取扱은公平하나割當期間의初期에輸入이集中되어無用의輸入競爭을誘發하고先着順을決定할때에稅關業務을複雜하게하는缺陷이있다.過去의輸入實績,使用實績등에따라서關稅官廳이事前に割當하는事前割當制度는不必要한混亂을피할수는있으나稅法適用의公平原則에서볼때不公平과이에 따른副作用을誘發할우려가있으며이것은또輸入割當에隨伴되는弊害와同一한弊害를惹起할우려가있다.

GATT에서는國內產業의保護手段으로서輸入制限은原則적으로禁止되어있으나關稅割當制度는無差別適用을要件으로하여認定하고있다. 이無差別方式은全面的인無差別以外에利害關係國과의交涉에의한國別割當方式및過去의貿易實績을基準으로하여決定되는國別割當方式이認定되고있다.

(2)彈力關稅制度運用의改善方向

이제까지살펴본彈力關稅制度중輸入自由化期의產業保護手段으로더욱가다듬어져야하는것은緊急關稅와割當關稅이다.

① 우선彈力率의範圍를現行 $\pm \frac{40}{100}$ 에서從來와같이 $\pm \frac{50}{100}$ 으로改正하여彈力關稅로서의제구실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② 現行緊急關稅를主로하고割當關稅를從으로하는制度運用에서割當關稅를主로하고緊急關稅를從으로하는制度運用으로轉換되어야한다. 물론緊急關稅와割當關稅는그目的과發動要件을달리하며, 반드시同一한對象品目에選擇적으로適用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基本稅率을補完하는政策手段으로活用하여면割當關稅의恒常的인實施와그適用對象의大幅的인擴大가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만,割當關稅適用에있어서는,앞에서言及한바와같이여러가지細心한研究와配慮가있어야하므로初期에는關稅行政의複雜性이加重될것이지만輸入自由化過程의產業保護手

段으로 定着시키기 위하여는 運用의 技術的인 洗鍊化가 要求되는 것이다.

3. 關稅減免制度

(1) 現況

關稅減免制度中 產業政策과 關聯하여 重要한 것은 重要產業減稅, 資源開發產業減稅, 原料品減免稅, 그리고 關稅減免과 類似한 效果를 노리는 關稅分割納付制 등이다.

重要產業減稅는 主로 重化學分野 業種을 對象으로 그에 所要되는 施設機械類 基礎設備品, 建設用材料等 國內製作이 困難한 것들에 適用하여 最大輕減率은 70%이다.

現行 重要產業減稅對象業種과 品目數는 다음 <表5>와 같다.

<表5> 重要產業減稅對象業種과 品目數

業種	品目數	業種	品目數
造船業	17	化學機械製造業	1
製鐵・製鋼業	17	化學肥料製造業	16
化學工業	70	비철금속제련업 및 정련업	13
石油精製業	41	알미늄 암연 암축업	4
시멘트製造業	63	自動車製造業	4
第一次金屬製造業	116	자동자료처리기계제조업	6
一般機械製造業	97	半導體素子製造業	12
輸送機械製造業	77	용접합금강판제조업	3
電氣機器製造業	57	石油 및 石炭化學製品製造業	3
機械部分品製造業	59	크실렌분류업	4
電子機器原材料製造業	69	電子機器部分品製造業	19
科學計測 및 調整機器製造業	34	特殊鋼製造業	3
電氣・鐵道・運輸業	35	공중통신용전자식자동교환기제조업	21
가성카리製造業	1		
肥料製造業	1	計	863

資料：關友會, 82年度 關稅法令集, pp.316 - 355에 의거 作成

이 减稅施行으로 輕減된 年度別減免額은, 1976年에 309億원, 77年 275億원, 78年 865億원, 79年 732億원, 80年 348億원, 81年 395億원 등으로 年度別 關稅

減免總額에 대한 年度別構成率은 각각 43.0%, 26.0%, 49.9%, 34.4%, 18.8%, 16.8%등이며 傾向의으로 그 構成率이 줄어 들고 있다.¹⁾

資源開發產業減稅는 資源產業에 所要되는 施設機械類와 基礎設備品으로서 國內製作이 困難한 것에 대하여 該當關稅額의 最高 85%를 減免하고 있으며 法定減免限度率은 90%以下이다.

現行 資源開發產業減稅對象業種과 品目數는 <表 6>과 같다.

<表 6> 資源開發產業減稅對象業種과 品目數

業種	品目數	業種	品目數
農業	7	鑛業	38
農業 · 牧畜業	4	燃料鑛業	28
牧畜業	2	發電業 및 送電業	79
養殖業	5		
沿近海漁業	3	計	166

資料：關友會，82 年度 關稅法令集，pp.355 - 365에 의거 作成

資源開發產業에 대한 減免額은 1976 - 81 年間에 22 億원(總關稅減免額에 대한 構成率은 3.1%)에서 233 億원(10.0%)으로 增加하였다.

原料品減免稅는 大統領令에 의한 稅關長指定工場에서 (1)船舶과 그 內燃機關 (2)航空機와 그 部分品 (3)配合飼料 (4)農藥 등을 製造하기 위하여 所要되는 部分品 및 原材料에 대하여 減免하는 것이며 最高減免率은 100%이다. 이 경우에는 船舶과 그 內燃機關用品으로서 64(CCCN 4 單位基準), 航空機와 그 部分品用으로서 90, 配合飼料用品으로서 5, 農藥製造用品으로서 31 등이 指定되어 있으나 어느 部門이든 減免의前提條件은 國內生產이 困難하고 主務部長官의 確認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976 - 81 年間 이 稅의 減免額은 103 億원(14.3%)에서 857 億원(36.7%)으로 增加하였다.

關稅分割納付制는 資金負擔을 덜어주기 위하여 最長 5年을 限度로 分割納付를 許容하는 것이며 產業支援과 關聯된 對象業種은 55개가 指定되어 있다.²⁾

1976 - 81 年間의 分割納付承認額은 404 億원에서 620 億원으로 增加하였다.

1)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82, p.496

2) 關友會, 82 年度 關稅法令集, pp.226 - 229

(2) 關稅減免制度의 改善方向

直接的인 產業支援과 關聯하여 以上에서 보아온 減免稅制度는 重化學工業化와 第一次產業保護에 크게 寄與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關稅減免制度의 效率化를 위하여는 業種別 成長可能性을 基準으로 이를테면 3年時限附減免業種, 5年時限附減免業種, 10年時限附業種등으로 關稅減免時限制를 導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年度別 關稅減免의 遞減稅率을 미리 豫示하여 企業經營을 計劃的으로 違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以上에서 輸入自由化에 對處하기 위한 關稅制度의 個別的인 改善方向을 提示하였거니와 輸入自由화의 實際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暫時 言及한 바 있거니와 첫째로 保護關稅率과 割當關稅 및 關稅減免制의 補完性에 의한 1次的인 產業保護와 輸入自由化에 따른 衝擊을 最大限 緩和하고 둘째로 手段面에서 第2次의인 緊急關稅를 活用하여 保護關稅 基調維持에 盡力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의 우리의 經驗은 貿易政策과 關稅政策의 調和와 連繫性 缺如인 바, 앞으로의 輸入自由化過程에서도 이같은 現象이 持續된다면 輸入自由化에 따른 意圖效果는 相反的인 것이 되거나 半減되는 結果를 가져오고 結果的으로 國民經濟에 돌이킬 수 없는 損失을 가져온다는 點을 考慮하여 兩政策의 事前調整과 綜合的인 連繫性을 갖추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基準으로 삼아야 할 것은 先進國의 歷史的인 經驗과 貿易政策上의 平凡한 原理이다. 主管業務의 獨自性이나 그것을 根據로 한 한쪽만의 獨自的인 政策立案이나 執行이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또 한편의 政策을 排除하였다는 原理의in 缺陷때문에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II. 關稅行政의 改編方向

1. 關稅行政의 機能

(1) 關稅行政의 現況

一般的으로 關稅의 機能은 다음의 세가지로 要約된다. 그 첫째가 產業을 支援하는 機能, 즉 關稅의 保護機能이라 일컫는 것으로 그런 機能을 가진 關稅를 保護關稅 라고 부른다. 다음 稅收의 確保機能을 가지는데 이는 關稅가 主要稅源이기 때문이며 이를 가리켜 財政關稅라고 한다. 또한 關稅는 課稅對象 輸入品 및 保護對象 輸入代替品의 國內價格을 올려 消費를 抑制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規制關稅라고 한다.

이러한 關稅의 機能을 充分发挥하기 위한 關稅行政은 稅務行政과 監視行政¹⁾으로 大別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가 發展되고 貿易自由化가 推進됨에 따라 稅收確保와 密輸團束에서 나아가 보다 多樣화된 關稅行政의 機能이 要請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國內產業을 保護하고 經濟發展을 推進하기 위하여 「輸出入 期別公告」等 貿易計劃에 따라 直接的으로 輸入을 規制하였기 때문에 傳統的인 貿易調整 裝置로서의 關稅率이 그 本來의 價格調節 機能을 喪失하여 資源의 合理的 配分과 物價體系의 歪曲現象을 惡起시켰고 때로는 國내產業의 過剩保護로 인해 消費者的 權益을 犠牲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產業構造를 우리의 國際競爭力에 맞추어 調整해 나가기 위해서 推進되고 있는 貿易自由化에 따라 關稅率 機能回復의 必要性이 增大되고 있다. 關稅率이 本來의 機能을發揮하기 위해서는 稅關의 監視行政이 效果的으로 充分发挥되어야 할 것이다.

(2) 關稅行政의 與件變化

最近 推進되고 있는 貿易自由化와 經濟發展에 副應하기 위해서는 關稅行政이 稅收確保나 密輸團束과 같은 稅務行政 · 監視行政의 機能에서 벗어나 보다 多樣한 機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本節에서는 이러한 環境의 變化, 즉 關稅行政의 與件變化에 따라 어

1) 監視行政은豫防的 機能과 團束的 機能으로 區分할 수 있다.豫防的 監視機能은 稅務行政이 目標로 하고 있는 稅收確保를 容易하게 達成할 수 있도록 諸般 與件을 造成하는 것이고, 團束的 監視機能은 關稅行政 秩序를 紊亂케 하거나 關稅法 秩序를 破壞하는 行為에 對해 依法措置하는 것을 말한다.

여한 機能이 要求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輸入自由화의 推進에 따른 國內市場의 開放으로 關稅의 國內產業 保護機能의 弱化가 要請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危害한 食品類의 摻入可能性에 對備한 消費者 保護役割도 要求되고 있다.

둘째, 先進國의 新保護貿易主義 強化로 인한 輸出不振을 打開하고, 國際收支를 防禦할 수 있는 機能이 必要하다.

세째, 對外 經濟協力上 國際關稅協力의 重要性이 增大되었다. 50年代에는 公共借款 導入 위주의 對外協力이었기 때문에 關稅協力이 微弱하였으며, 60~70 年代에는 經濟成長과 더불어 民間베이스의 借款이 增大되고 輸出市場 開拓이 急先務이어서 海外 商務官의 役割增大와 함께 國際關稅協力의 必要性을 서서히 認識하게 되었다. 그러나 80年代에 이르러서 先進國의 關稅 및 非關稅障壁에 의한 保護貿易主義의 強化로 惡起될 憂慮가 있는 우리의 輸出主導型 經濟成長 戰略의 崩跌을 解消키 위하여 國際關稅體制로의 改編 대비 整備가 切實히 요청되며, 나아가 環太平洋 共同體 構想의 實現을 위한 關稅行政의 多角的 對策樹立을 위해서도 國際關稅協力의 必要性은 至大하다 할 것이다.

네째 物動量의 急增에 따르는 千億弗 通關體制에 對備하여 業務의 電算化 開發에 迫車를 가하고 具備書類의 減縮 및 節次의 간소화 等을 통하여 通關業務의 迅速 正確化를 도모해야 한다.

이와같은 與件變化의 要請에 副應하기 위해 우리의 關稅行政은 어떠한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世界主要國들이 어떤 貿易·關稅政策으로 이러한 變化에 對處해 나가고 있는지 검토해 볼必要가 있을 것이다.

2. 世界主要國의 貿易政策·關稅制度上의 輸出入規制 實施現況

世界各國은 貿易을 通한 相互依存度가 높아져 各國의 一方的인 貿易 및 關稅政策이 다른 나라에 큰 被害를 줄 可能性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시아·太平洋 地域國家 中 濟洲와 뉴우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地域國家 間에 限定된 部分이나마 關稅讓許에 依한 協商이 進行되어 왔으나 各國의 利害對立으로 아직 具體的이며 滿足스러운 結果도 없고 오히려 各國이 漸增하는 相互依存에 逆行하는 措置를 取하여 다른나라에 被害를 입히는 事例가 많았다.

美國은 대만·홍콩·日本·韓國과 雙務的인 輸出規制 協定을 맺고 있으며 多者間 纖維協定에 따라 韓國·대만 等 纖維類 輸出國들에게 保護障壁을 높이고 있다. 그외 輸入規制措置로서 輸出自律規制, 輸入禁止, 相計關稅, 輸入쿼터, 任意的 輸入許可 및 雙

務崑터에 의해 輸入規制를 實施하고 있다.

캐나다는 GATT 19 條를 利用하여 總量崑터制를 實施(絹織製品, 신발류, 特定纖維類 等)하고 있으며 그외 通關節次, 輸入崑터, 輸出自律規制 等을 通해 輸入規制를 實施하고 있다.

日本은 政府의 行政指導를 통한 輸入規制(纖維類, 皮革製品 等)를 하고 있으며 一次產品에 대하여 任意的 輸入許可, 輸入崑터, 輸出自律規制 等을 通해 規制하고 있다.

豪洲는 輸入崑터制(自動車, 綿織物, 製紙品 等), 總量崑터制(文房具類, 鐵도날, 鋼板, 절연체 等)와 關稅崑터制 等을 實施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企業 및 個人別 輸入免狀制와 輸入禁止措置를 通해 輸入規制를 實施하고 있다.

以上에서 본 것과 같이 先進國들이 表面上으로는 輸入自由化 措置를 取하고 있으나, 內面的으로는 自國產業保護와 失業防止 等의 目的으로 보이지 않는 貿易管理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方向을 提示하기 위해서는 各國이 어여한 貿易 · 關稅政策을 實施하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各國의 貿易 · 關稅政策 및 輸入管理制度, 輸入規制現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先進國 (캐나다 · 豪洲 等)의 貿易 · 關稅政策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關稅政策이 나아가야 할 方向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環境에 處하여 國際市場에서 競爭關係에 있는 自由中國이 이러한 先進國들의 政策에 對應해서 어떤 貿易 · 關稅政策을 實施하고 있는지를 比較해 보는 것도 意味가 크다 할 것이다. 이밖에 프랑스, 말레이지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I) 貿易 및 關稅政策

① 캐나다

캐나다는 保護貿易政策을 堅持하고 個個國家外 交易 Bloc 과의 雙務協定에 注力하고 있다.

關稅割當制度(Tariff Quota System)를 導入하여 一般特惠關稅制度 受惠에 對해서도 間接的 規制를 하여 一般特惠關稅制度 受惠에 따른 製品의 大量流入時 一定限度를 設定, 限度超過分에 대해서 一般稅率를 適用하여 規制하고 있다.

그리고 聯邦販賣稅(Federal Sales Tax)의 課標基準을 稅收增大 目的으로 變更하였는데 그 內容을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즉 輸入原價 또는 工場渡 價格基準에서 都賣價格을 課標基準으로 하여 聯邦販賣稅를 收益價格에 賦課시킴으로써 輸入業者 및 生產業體에게 追加 負擔이 되게 한다. 이밖에 國內脆弱產業 保護를 위한 關稅 및 非關

稅 障壁이 매우 높다.

캐나다의 關稅分類方式을 보면, 브뤼셀 關稅分類條約(BTN條約)에 加盟하지 않고 獨自的인 關稅分類表(The Canadian Tariff Schedule)를 使用하고 있다(단, 化學製品과 플라스틱 製品에 對해서는 BTN(C.C.C.N)分類에 따르고 있다).

캐나다는 주로 從價稅를 適用하고 있으나, 石油製品等一部品目에 대해서는 從量稅를 適用하고 있다. 또한 纖維製品에는 從價稅와 從量稅를 同時 賦課하며 生鮮, 과일 등에는 季節關稅를 부과하고 있다. 從價稅의 課稅基準은 輸出國에서의 公正市場價格이나 F.O.B價格中 높은 것을 基準으로 한다.

그리고 開途國產品의 市場擴大를 위해 1974年부터 一般特惠關稅(General Preferential Tariff)制度를 實施하고 있다. 特惠關稅率은 無稅이고 特惠供與期間은 일단 10年으로 되어 있으나 内閣이 그 延長과 擴大를 決定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對象品目은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에 의해 特定의 一般特惠 除外品만 指定하여 供與한도는 特定限度를 設定하지 않고 負債條項方式에 의해 긴급한 경우에 輸入量과 潤稅率을 操作하여 輸入을 制限할 수 있도록 하였다.

關稅以外에 物品稅와 販賣稅도 賦課하여 輸入抑制必要에 따라 關稅보다 輸入附加稅, 즉 物品稅率이나 販賣稅率을 引上하는 措置를 取하고 있다. 또한 垂平輸出로 國內產業이 實質的인 被害를 보게 되는 경우 垂平稅를 賦課하는데 垂平輸出의 事實調查는 國稅省이 行하며 被害要件의 認定調查는 垂平防止 審查委員會가 擔當한다.

② 濟洲

濟洲는 基本的으로 關稅로서 輸入을 統制, 調整하여 國內產業을 保護하고 있다. 지난 1965年 7月 1일부터는 CCCN分類를 따르고 있는데(단, 統計는 SITC를 基準으로 함), 72年 7月 1일부터는 모든 수치를 미터법으로 變更 實施하고 있다. 關稅賦課基準은 대개 從價稅를 適用하고 있으나 從量稅를 쓰는 경우도 있다(특히 關稅割當 超過分 適用 時).

또한 特惠關稅에는 캐나다, 뉴질랜드 特惠關稅와 PI(Pacific Island) 特惠關稅 및 DC 關稅가 있고 產業支援을 위해서는 종종 一定期間만 適用하는 暫定關稅制度가 있으며, 國內生產이 不可能하거나 教育用, 政府用 等으로 輸入하는 物品에 대해서는 無稅로 輸入하게 하는 「By-law Duty」制度가 있다.

③ 自由中國

自由中國은 最近 貿易自由化를 促進하기 위한 措置를 實施하고 있다. 그 첫째로 關稅法을 철저히 檢討하여 모든 保護期間을 明示하여 주된 輸入稅率을 段階적으로 節減하여 政府에 依賴하는 習慣을 버리도록 誘導하고 있다. 또한 國內物價의 安定을 위하여 事前에 一定商品價格의 上限을 두어 價格이 超過될 경우 輸出을 위한 輸入稅還給

혹은 輸出稅를 停止시키고 있다.

그리고 通關의 便宜를 위해서 國內保稅區域 혹은 加工地域의 商品을 一定한 基準에서 適當히 課稅하여 國內市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말레이지아

말레이지아는 傳統的으로 低關稅政策을 取하고 있는데 工業製品은 대개 15~20 %의 關稅가 賦課되고 있으며 國內生產이 되지 않는 機械, 輸送機械類는 거의가 無稅이다. 그러나 工業化 進展과 더불어 國內產業育成을 위한 保護關稅의 導入 傾向이 점차 두드러져 關稅政策은 종전의 原料課稅·製品無稅로부터 製品課稅·原料無稅의 方向으로 轉換되고 있다.

그리하여 貿易의 擴大를 國內諸產業의 振興의 基調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傳統的인一次產品 輸出뿐만 아니라 工業製品의 輸出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國內產業保護를 目的으로 輸入制限을 實施하고 있는데 輸入制限措置로서는 輸入許可 發給規制, 關稅率引上 等이 있다.

(2) 輸入管理制度

① 캐나다

캐나다는 關稅法(Tariff Act)에 의거한 輸入禁止品目, 輸出入 許可法(Export-Import Act)에 의거한 輸入許可品目 以外에 反dump規制, 纖維製品 輸入規制를 實施하고 있다.

1) 輸入監視制度

一萬달러 以上의 對캐나다 輸出에 있어서는 「Form B-31」이라는 樣式의 特別通關申告書를 提出하도록 하여 輸入監視의 對象으로 삼고 있다. 이는 海外輸出業者가 特別한 輸出優待措置를 받고 있는지의 與否를 確認하기 위한 制度이다.

2) 纖維輸入管理

캐나다 國內產業에 被害를 줄 우려가 있는 纖維輸入品에 대해서 政府間 交涉 또는 一方的 措置에 의해 年間ベ이스로 規制를 實施하고 있으며 一部品目에 대해서는 GATT 19條에 의거한 總量쿼터制(Global Quota)를 導入하였으나 歐美各國의 反撥에 부딪혀 國家協定에 의한 規制로 方針을 轉換하였다.

② 濟洲

호주는 약간의 特殊한 品目에 대한 輸入禁止 및 輸入許可制를 除外하고는 거의 100 %에 가까운 輸入自由化가 實施되고 있다. 따라서 唯一한 國내產業의 保護策으로 關稅制度가 運用되고 있으며 그밖에 一般特惠關稅制度(GSP) 및 「By-law」制度가 있다. 輸入政策의 推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62年 輸入許可制을 撤廢하고 貿易自由政策을 標榜
2) '73年까지는 保護關稅 性格을 具 關稅率을 25% 大幅引下하는 등 自由化를 적
극 推進
3) 石油波動後 '74年부터 輸入이 急增함에 따라 輸入쿼터制를 부활시키고 輸入規
制를 強化
4) '77年 5月의 製造業白書에서 特定工業分野에서의 國內供給이 國內市場에서 特
定比重을 點하도록 輸入을 規制한다는 新로운 政策을 發表
위와같은 輸入規制 強化가 實質的으로 고용에 어느 정도 奇與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輸入規制機關인 TAA (Temporary Assistance Authority) 및 獨立諮詢機構인 IAC (Indus-
tries Assistance Commission) 조차도 否定的인 意見을 提示하는 등, 호주 自體內
에서도 硬直化되어가는 輸入政策에 批判的인 輿論이 擡頭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輸入政策은 最近의 世界景氣沈滯와 先進工業國들의 保護貿易主義傾向
에 따라 大幅의 輸入開放 등의 急激한 措置를 취할 可能性은 희박하며 다만 國內經濟
를 保護시키지 않을 정도에서 輸入을 開放하거나 國內產業 保護政策의 縮小를 推進
할 것으로 보인다.

③ 프랑스

프랑스는 國別 또는 地域別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方式을 採擇하고 있으며 兩國間 및 多者間 貿易協定에 입각한 管理制度를 實施하고 있다.

1) 地域別 管理

프랑스의 輸入은 大部分 自由化되어 있는데 다른 地域으로부터의 輸入은 原產地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分하고 있다.

第Ⅰ地域：舊 OEEC諸國, 美國, 캐나다 및 屬領

第Ⅱ地域：기타의 GATT諸國(韓國포함)

第Ⅲ地域：東歐共產圈 및 中共

第Ⅳ地域：東獨

2) 品目別 管理

—輸入自由化 品目：輸入許可 不必要

地域別로 行政비자의 取得을 要하는 品目の 경우, 事前 輸入申請을 하여 비자를 取得해야 한다.

—輸入쿼터品目：다음의 4 가지 輸入쿼터制度가 있다.

· 雙務協定에 의한 Bilateral Quota

· EC의 Global Quota

· 프랑 圈外의 第三國에 適用되는 쿼터

· 輸入業者에 個別의 으로 適用되는 쿠터

一特別 輸入管理品目：國家的 見地에서 戰略上 重要한 品目の 輸入에는 I/L 및 行政비자 대신 特別許可가 必要

一輸入證明 必要品目：EC共同 農業政策이 適用되어 EC域外로부터 輸入되는 農產物
一國定貿易品目：菸草, 武器 및 火藥類, 石油, 성냥, 新聞用紙 등

④ 自由中國

1) 輸出入節次 簡素化

信用있는 輸入業者が 輸入하는 경우 또는 食品 等 鉅한 時日을 要하는 商品의 輸入時 「先出庫 後通關」手續制度를 實시하여 輸出入의 遲延을 막고 있다.

2) 還給節次 簡素化

經濟安定, 物價安定 等과 關聯하여 定額還給品目 繼續 擴大 등을 통한 還給節次 簡素化를 追求하고 있다.

3) 輸入自由化 繼續擴大

輸入地域制限의 漸進的 撤廢, 輸入關稅의 漸次的 引下로 輸出用 原副資材의 適期 · 低廉한 購入 · 供給을 圓滑하게 하고 있다.

4) 特別品目 輸入管理

生產設備 및 機械 그리고 原料輸入에 대하여는 輸入關稅의 保稅, 分割納付, 記帳 制度를 適用, 輸出比率이 內需比率보다 越等히 높은 一部 品目에 대하여는 內需 · 輸出區分없이 一定하게 內需比率의 稅金만을 課稅하고, 또한 關稅還給 撤廢로 還給에 따른 不便을 除去시켜주고 있다.

5) 商品分類現況

自由中國의 商品分類는 다음 6 가지로 區分된다.

- 輸入自由品目(Permissible Import Items)
- 輸入制限品目(Controlled Import Items)
- 輸入禁止品目(Prohibited Import Items)
- 輸出自由品目(Permissible Export Items)
- 輸出制限品目(Controlled Export Items)
- 輸出禁止品目(Prohibited Export Items)

이中 輸入規制 對象品目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輸入自由品目

原則的으로 自由로이 輸入될 수 있는 品目. 그러나 國內產業 保護 및 物價安定等 國內 與件을 고려하여 品目에 따라 輸入地域制限, 輸入資格制限, 高關稅率適用 等 關稅 및 非關稅 障壁을 實施

둘째, 輸入制限品目

國內產業의 保護育成 및 需給狀況 調節 目的으로 輸入을 統制하는 品目

세째, 輸入禁止品目

國防, 治安, 衛生 등과 關聯되는 品目(例: 武器, 麻藥 등)

⑤ 말레이지아

말레이지아 輸入管理制度의 核心은 輸入許可發給制에 있으며 輸入制限命令인 通關命令書(Customs Order)中에는 첫째 輸入禁止品目, 輸入禁止地域(First Schedule), 둘째 輸入制限品目(Second Schedule), 세째 國內產業保護를 위한 暫定的 輸入制限品目(Third Schedule), 네째 特定輸入制限品目(Fourth Schedule)이 明示되어 있는데 輸入制限品目과 國內產業保護를 위한 暫定的 輸入制限品目에 해당하는 商品을 輸入할 때는 미리 關稅廳長의 輸入許可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國內產業保護品目은 情勢의 變動에 따라 수시로 追加 또는 刪除하도록 되어 있다.

(3) 輸入規制現況

① 濟洲

1) 輸入許可制

競爭價格으로 流入되는 輸入品으로부터 國內產業을 保護하기 위한 措置로서 一 種의 非關稅 輸入規制이다.

輸入許可 對象品으로는 運搬用 車輛, 建設用 重裝備 等이 있는데 이들 品目이 許可없이 輸入될 時는 刑法上의 罰則을 받거나 没收되며 해당品目은 輸入禁止가 된다. 또한 輸入許可制는 輸入量을 엄격히 限定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特定 商品과 特定 國家에 따라 選別의으로 適用할 수 있다.

한편 輸入禁止品目(Prohibited Imports of the Customs Regulation)에 規定된 品目으로서 麻藥, 炸藥, 特定武器, 不穩書籍 등은 輸入이 禁止되고 있다.

2) 關稅割當制(Global Tariff Quota)

事前에 決定된 水準까지만 輸入을 制限하기 위하여 정해진 量의 上限線을 超過할 時에는 超過分에 대해 高關稅率이 적용된다. 割當量의 水準은 TAA(Temporary Assistance Authority) 및 TA(Textile Authority)의 권고에 의해 決定되어 該當品目으로는 신발類, 衣類, 섬유類, 鋼板, 自動車 等이 있다.

3) 反dumping 關稅

反dumping 關稅의 適用基準은 輸出價가 輸出國의 國內價格(Domestic Price)보다 低價일 때, 輸入價가 濟洲의 國內 市場價(Normal Value)보다 저렴할 때 및 輸入으로 인한 國內產業에 實質的인 危害(Substantial Injury)가 미칠 때 등이며 그의 發效 節次는 다

을과 같다.

- 덤핑關稅 賦課 申請
- 덤핑評價委員會의 審議
- 評價擔當官의 덤핑調查與否 決定
- 立于國內 및 輸出國의 價格 調查
- 輸入業者·生產者·大使館等 모든 關聯者의 參與下에서 意見을 제출하는 公聽會開催

- 國內產業에 實質的인 威脅與否에 關한 意見을添附한 IAC의 最終報告書作成
- 企業消費省長官의 決定 및 公告

反덤핑關稅에 提訴되면 확실한 협의가 確認될 때까지 일정액의 現金(Cash Security)을 納付하고 협의가 없을 때 輸入商에 換拂하고 있으나 事實上 提訴되면 輸入은 거의 중단 상태가 된다. 따라서 製造業體와 販賣商의 利益率이 감소될 때 暫定的인 輸入規制를 目的으로 心理的인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자주 發動되고 있다.

4) 非關稅障壁

- 電氣製品은 販賣業에 聯邦電力局(State Electricity Authority)의 安全規格에 관한 承認을 받아야 한다.
- 動植物은 生死에 관연없이 部分일지라도 檢疫所의 檢疫을 받아야 한다.
- 食料品 및 藥品은 品質, 安定性, 純度 等에 관하여 聯邦政府 또는 州政府의 別途規制를 받는다.
- 其他 商品이나 포장에 去來에 관한 說明(Trade description)과 原產地를 表示해야 하며 英文商標附着, 標準포장 規格 使用 等의 規制가 있다.

5) 輸入規制 諮問機關

輸入에 대한 國內產業 保護目的의 緊急措置로는 產業支援法(Industries Assistance Act, 1973)에 의한 暫定保護制度가 있는데 이를 檢討하는 機關으로 TAA(Temporary Assistance Authority)와 IAC(Industries Assistance Commission)等의 獨立諮詢機關이다. 暫定保護의 方法으로는 暫定關稅의 設置, 輸入數量規制의 導入 및 이들을 併用하는方法(關稅割當 等)이 있다.

② 프랑스

프랑스의 輸入規制形態는 어느 會員國보다 複雜多樣하며 稅關官吏들의 고의적인 업무지연도 輸入業者들의 불평대상이 되고 있다. 그외에도 日本을 비롯한 域外 先進國내지 先發開途國의 鐵鑄, 船舶, 電子製品과 纖維, 신발 等의 輕工業製品에 대한 EC內의 輸入抑制 움직임 뒤에는 프랑스의 입김이 크게 作用하였으며 다른 會員國에서는 아직 規制 對象이 되어 있지 않은 타일類, 식탁용 나이프, 우산類, 완구類 等의 Global

Quota に於ける一方的輸入쿼터等으로規制되고 있다.

이외에도 韓·EC 纖維쿼터 및 EC, GSP 쿼터의 會員國別 配定에서도 프랑스가 그市場規模에 비해 극히 적은 량을 占하고 있다는 事實은 同市場이 閉鎖的이고 排他的임을 立證하고 있다.

1) EC共同規制

EC는 韓國에 대해서 纖維類 및 양송이 통조림에 對한 쿼터規制를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EC의 對外 貿易政策에 따르고 있다. 프랑스의 輸入規制 움직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81年에는 대만에 대해 輸入規制를 實施하기 시작하였고 韓國에 대해서도 輸入規制를 시도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5月 歐洲 신발製造業界는 韓國產 페저용 신발에 대한 對策을 具體的으로 講究한 바 있다.

2) 프랑스의 單獨規制

—一方的輸入쿼터規制

프랑스는 GATT의 殘存輸入制限(Residual Import Restriction)에 依據하여 特定國의 特定製品에 對해 프랑스 政府가 一方的으로 割當量을 정해 該當國 駐在公館에 通報后 施行하는 쿼터制度가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GATT의 정식 承認을 받지 않고 輸入制限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現在 韓國에 대한 一方 輸入쿼터品目은 라더오, TV, MFA 品目 以外의 섬유類, 우산類, 완구類 等이 있으며 韓國 以外에도 홍콩, 日本, 대만 共產圈 國家等도 特定品目에 대한 一方規制를 받고 있는데 同쿼터는 購買者 쿼터(Buyer's Quota)로 運用하고 있다.

—總量쿼터(Global Quota) 規制

同쿼터規制는 프랑스「關稅 및 間接稅廳」1967年 1月 30日字 法令 第84條에 열거된 特惠對象 國家, 프랑스諸國에 대해서는 適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산類의 경우 프랑스는 對韓輸入쿼터量을 別途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韓國은 同 總量쿼터規制에서는 除外된다는 것이다.

—事前輸入申告

信用狀 開設以前에 工業省에 輸入申告를 하여 輸入비자 to 取得해야 하는 바, 同制度는 輸入品이 國內市場에서 摆亂을 야기할 可能性을 事前에 防止하기 위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輸入許可制의 效力を 發揮하면서도 名目上으로는 規制形態로 看做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同制度는 순수한 意味의 市場監視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對外的으로 自由貿易主義의 名分을喪失하지 않고 輸入抑制效果를 노리기 위한 制度라고 볼 수 있다.

—衛生検査 및 技術規制

農產品 및 水產製品 等에 대해서는 輸出國 政府가 發行하는 위생검사畢證을 要求하고 있으며 自國의 工業基準에 따라 規制를 必要에 따라 施行하고 있다.

3) 品目에 따른 輸入節次

—輸入自由化 品目の 輸入(Importation des Marchandises Libérées)

輸入自由化 品目の 輸入은 原則的으로 原產地國과 開途國 모두가 交易自由化 措置에 해당되는 한 그 輸入에 있어서 아무런 物量制限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商品은 순수한 意味의 輸入管理制度에서 볼 때 하등의 形式的인 절차 없이 輸入이 가능하다. 그러나 經濟省이나 對外貿易省이 發表하는 輸入業者 公告에 의해 交易自由化 品目 中一部는 輸入許可書를 발급받거나 輸入申告를 해야할 必要가 있다.

—輸入制限 品目の 輸入

物量制限 對象이 되는 品目을 뜻하며 이러한 品目の 原產地國과 開途國은 큐터設定對象國에 該當된다. 同品目の 輸入은 先미자添附 輸入申告方式과 輸入許可에 의한 方式이 있다.

③ 自由中國

自由中國은 對外的으로 自由經濟體制를 표방하면서도 政治·經濟上의 理由로 輸入地域 制限과 輸入申請人 資格制限 等의 規制를 實施하고 있다.

1) 輸入申請人 資格制限

輸入申請人 資格制限 品目은 原則的으로 自由輸入品目이지만 必要에 따라 特定人에게만 輸入資格을 賦與하여 間接의 輸入規制를 實施하고 있다.

2) 國際入札時 入札參加地域 制限

實需要者의 要請 또는 貿易不均衡 是正 등의 이유로 指定된 國家나 地域에서만 入札에 參加하도록 制限한다.

3) 特別輸入許可

輸入큐터라고 할 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特別案件」으로 申請된 案件을 接受審議를 거쳐 輸入量을 할당하여 輸入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3. 產業, 貿易, 關稅行政의 有機的 調整

앞에서 各國의 貿易政策, 關稅行政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를 어떤 方向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現在 안고 있는 問題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輸入超過로 만성적인 國際收支의 赤字現象을 보이면서 이 赤字를 補填키 위하여 또 다른 長短期의 海外資本을 導入해온 결과 外債가 계속 累增되어왔다.

輸入障壁의 강화를 통하여 國際收支의 赤字幅을 줄이는 것이 이러한 外債의 累增을 막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保護貿易主義的 政策이 단기적으로는 輸入減少에 기인할 수 있더라도 우리 經濟의 輸出依存度를 감안할 때 이러한 적접적인 輸入規制는 궁극적으로 輸出增大에 마이너스效果를 가져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國際貿易秩序의 趨勢로 볼 때도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輸出을 계속 伸張하기 위해서는 國內생산품의 國際競爭力提高가 불가피한 課題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國內生產品의 競爭力提高의 誘因을 제공하기 위한 단계적인 수입자유화의 추진은 政策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輸入自由化措置以後 있을지도 모를 輸入量의 急速한 增加가 國內市場經濟의 需給均衡에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國內產業의 國際競爭력을 충분히 갖추기도 전에 優秀한 外國商品에 암도되어 유통산업, 더 나아가서는 長期의으로 保護育成되어야 할 戰略產業 조차도 그 成長이 저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輸入自由化的 단계적인 推進이 우리의 당면과제라고 전제할 때 過多한 輸入으로 인한 不必要한 外貨浪費를 막고 國際收支의 均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市場秩序의 確立, 技術條件의 改善, 健全한 消費風土의 전작 등 國內市場의 諸般與件이 조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國內產業保護와 國內經濟의 원활한 需給均衡을 위하여서도 輸入物量을 적절한 水準으로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보완조치가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볼 때 直接的이고도 顯示的인 輸入規制는 交易相對國으로부터 심한 反發을 招來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輸出增大에 중대한 障碍要因으로 發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直接規制나 關稅等의 顯示的인 方法을 점차 緩和해 나가는 대신 行政指導를 통한 選別의이고도 實質的인 輸入金額 및 數量의 調節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均衡의인 成長과 國際收支의 安定을 도모할 수 있는 產業, 貿易, 關稅行政의 有機的인 調整이 절실히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2) 基本調整方向

長期적으로는 輸出入의 均衡을維持하고 外貨獲得能力을 提高함과 동시에 外貨節約을 위한 근본적인 對策이 必要하며 短期적으로는 輸出能力과 資金調達ability을 고려한 弹力的인 輸入調節機能에 대한 強化對策이 講究되어야 하겠다.

行政的인 측면에서 볼 때 關稅廳은 關係部處와 협의하여 國內需要量과 生產能力을 고려한 適正輸入量을 算出하고 各 業體別 輸入量을 調査하여 行政指導의 基準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關稅規程의 制·改定으로 稅關通關節次를 多元化함과 동시에 輸入抑制品目에 대해서는 더욱 복잡한 節次를 適用할 필요가 있다.

또한 國內製造業界의 保護를 위해 特定物品의 輸入抑制 必要性에 대한 請願등을 적극 권장, 수집하여 行政指導의 基本情報로 活用한다.

關係部處나 혹은 關聯經濟團體들의 研究調查結果를 중심으로 品目別 國內需要量, 生產能力, 適正輸入量을 算出하되 分期別 또는 一定期間別로 그것을 例示하여 業界가 自發的으로 過多輸入을 抑制토록 유도한다.

美國의 ITC와 같은 機能을 擔當할 機構, 假稱「關稅貿易行政諮詢委員會」를 設置하여 長期의 關稅貿易政策을 准비하고 貿易 및 關稅에 관련된 모든 情報를 綜合,各界의 意見을 關係部處, 國會 및 最高決定機關에 直接 通報, 建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輸入自由化가 90% 이상 진행될 때에는 現行 財務部關稅局, 商工部의 產業政策擔當機構를 하나로 統合, 一元化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品目別 國內需要量, 生產能力, 適正輸入量에 대한 決定과 이에 따른 規制內容 및 方法의 결정은 關聯部處의 요청에 의거, 關稅貿易政策을 총괄하는 종합기구에 의해 최종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緊急輸入調節機能은 稅關節次의 主管을 통해 關稅廳이 擔當할 수 있도록 하여, 프랑스에서와 같이 輸入業者가 L/C를 開設하기以前에 이미 商務省에 輸入申告를 하는 制度를 參考하여 우리도 國際收支를 고려하면서 事前에 行政指導를 통해 業體別로 각각 輸入을 調整시킬 수 있는 裝置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4. 輸入抑制 및 輸出促進 裝置

80年代에 들어서까지도 世界景氣의 回復展望이 불확실해지자 이미 높은 失業率등의 國內經濟問題로 고민하고 있던 先進諸國들은 對外的으로는 世界景氣의 活性化를 위해 自由貿易主義를 외치면서도 對內的으로는 國內產業保護와 失業者 구제를 위해 保護貿易的인 措置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이러한 貿易環境變化에 따른 輸出減少에 대비할 수 있는 伸縮性있는 輸入構造를 지니고 있지 못한 國家의 경우에는 對外債務償還에 압박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自國產業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해서 輸入自由化를 推進하면서도 自國產業保護 및 國際收支防禦를 위해서

강력한 輸入調整方案을 講究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環境에 對應하여 우리는 어떠한 措置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關稅政策의 側面을 中心으로 한 우리의 方向을 提示하고 이를 跟 받침하기 위한 非關稅行政的 措置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 關稅行政 側面

關稅行政이 貿易, 특히 輸入의 調節에 관여하는 비중은 앞으로 貿易規模가 커짐에 따라 날로 擴大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行政的인 側面에서의 改編이 必要하다.

이를 위해 첫째로 稅關節次의 多元化를 통하여 關稅 및 稅關節次를 對象物品에 따라 彙力的으로 運用하는 方案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關稅率의 引上, 引下 建議權을 關稅廳에 賦與하는 것도 考慮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效率的인 輸入調節을 위하여 經濟關係部處에서 輸入抑制必要品目의 통보를 받을 경우 輸入業體別로 輸入調節權을 發動하여 迅速히 輸入을 調節할 수 있는 權限을 關稅廳에 賦與하는 方案 等도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方案을 具體的으로 실현하기 위한 예를 實務次元에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國際貿易動向 및 稅關別, 業體別 輸入現況의 파악은 商工部 主管下에 關稅廳과 品目別로 關係部處가 行한다.

② 輸入監視制度(特別輸入申告)의 設置로 10萬달러 이상되는 對韓輸出에 있어서는 캐나다와 같이 특별한 양식의 特別通關申告書를 提出토록하여 輸入監視의 對象으로 삼아 海外業者가 특별한 輸出優待措置를 받고 있는지의 與否를 확인한다.

③ 덤핑輸入으로 國內產業이 被害를 보게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덤핑세를 부과한다.

④ 輸出入節次를 選別的으로 간소화하여 信用있는 業體의 輸入, 혹은 緊急한 物品의 輸入時 先出庫 後通關을 함으로써 時間과 人力을 절약할 수 있다.

⑤ 輸出比率의 内需比率보다 월등히 높은 일부 原資材品目은 最近 自由中國의 措置와 같이 内需·輸出區分없이 일정하게 内需比率의 稅金만을 부과하여 關稅還給에 따른 不便을 除去한다.

⑥ 經濟安定과 物價安定에 關聯하여 定額還給品目을 계속 擴大實施할 필요가 있다.

⑦ 國際關稅協力活動의 強化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日本, 台灣, 香港과의 稅關協力會議를 太平洋沿岸 및 ASEAN諸國들까지도 擴大實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雙方間 稅關協力擴大는 특히 美國과 같은 先進國의 발달한 關稅行政技法導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⑧ 關稅 및 通關에 관한 事項이 混合되어 法體係의 複雜性을 야기시키고 있는 現行 關稅法을 關稅法과 通關法으로 二元化시킬 需要가 있다. 따라서 關稅法은 財務部 소관으로 通關法은 關稅廳 소관으로하여 向後의 非關稅障壁을 交易相對國이 알기 힘들게 할 需要가 있다.

⑨ 輸出業體의 自家保稅藏置場 特許基準을 와화하여 業體의 經費節減을 유도한다.

⑩ 指定稅關制度를 活性化하고 현재의 輸出入申告件別管理制度를 整備하여 業體別管理制度로 轉換할 需要가 있다.

⑪ 事前評價制度 대신 86年부터 實시하기로 되어있는 事後評價制度를 早期 實施함으로써 不必要한 通關所要時間 을 줄일 必要가 있다.

(2) 非關稅行政 側面

非關稅行政의 側面에서 輸入을 抑制하는 方案을 概括的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로 間接的인 統制方法을 例로 들 수 있다. 이는 貿易收支逆調의 是正策이 必要할 때 交易相對國의 輸入開放程度에 따라 輸入國別, 地域別, 商品別, 產業別로 差別的인 輸入政策을 實施하는 것과 같은 非關稅障壁을 말한다.

둘째, 直接的인 統制手段으로 商品의 種類, 產業의 範圍뿐만 아니라 特定企業 혹은 個人등 個個 經濟主體에 對하여 輸入規制를 할 수 있는 制度의 강구도 需要하다.

非關稅行政面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밖의 것으로 有害商品의 國內導入을 억제키 위해 輸入檢查對象品目的 엄격한 事前檢查가 必要하며 이 檢查結果는 商工部 主管下에 關稅廳 中央分析所와 협의하여 通關與否判斷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러한 制度的 裝置는 需要할 때 非關稅障壁으로 훌륭히 活用할 수 있는 것이다.